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34

발의연월일: 2020. 9. 18.

발 의 자:고용진ㆍ이용빈ㆍ이성만

정춘숙・오영환・장철민

양정숙 · 남인순 · 주철현

박완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, 납부고지,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, 매각,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 납처분으로 구분됨.

그런데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체납처분을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 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03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강제징수비

제7조의3의 제목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비"로, "체납처분비고지서"를 "강제징수비고지서"로 한다.

제11조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체납처분을"을 각각 "강제징수를"로한다.

제19조제3항 중 "체납처분(교부청구는 제외한다)을"을 "강제징수(교부청구는 제외한다)를"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장 제1절의 제목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25조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한다.

제28조의2의 제목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, "체납처분"을 "강제징 수"로 한다.

제30조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한다.

제30조의2의 제목·제1항 및 제2항 중 "체납처분"을 각각 "강제징수" 로 한다.

제33조의3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3장제3절의 제목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체납처분 대상"을 "강제징수 대상"으로,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, "체납처분은"을 "강제징수는"으로 한다.

제49조제3항 본문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한다.

제62조제1항제1호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69조제1항제2호 중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하고, 같은 항제3호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78조제2항 중 "체납처분비"를 "강제징수비"로 한다.

제3장제12절의 제목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85조의 제목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체납처분의"를 각각 "강제징수의"로, "체납처분비"를 각각 "강제징수의"로, "체납처분을"을 각각 "강제징수를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체납처분의"를 "강제징수의"로, "체납처분을"을 "강제징수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체납처분"을 각각 "강제징수"로 한다.

제85조의2의 제목·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"체납처분"을 각각 "강제징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 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3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체납액"이란 체납된 국세와	2
<u>체납처분비</u> 를 말한다.	<u>강제징수비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징수의 순위) 체납액의 징	제4조(징수의 순위)
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	
에 따른다.	<u>.</u>
1. 체납처분비	<u>1. 강제징수비</u>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3(지급명세서 등의 재산	제7조의3(지급명세서 등의 재산
조회 및 <u>체납처분</u> 활용) 세무	조회 및 <u>강제징수</u> 활용)
서장(지방국세청장·국세청장을	
포함한다)은 「소득세법」 제1	
64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120조	
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	
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	
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	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	
관한 법률」 제4조제4항에도	
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	
<u>체납처분을</u> 위하여 사용할 수	- <u>강제징수를</u>

있다.	
제9조(납세의 고지 등) ① (생	제9조(납세의 고지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	②
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	
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	<u> 강제징수비</u>
자에게 <u>체납처분비</u> 의 징수와	<u>강제징수비</u>
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, 세	
목 및 <u>체납처분비</u> 의 산출근거,	<u>강제징수비</u>
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	
<u>체납처분비고지서</u> 를 발급하여	<u>강제징수비고지서</u>
야 한다.	
제11조(납부기한의 지정) 세무서	제11조(납부기한의 지정)
장은 세법에서 국세(<u>체납처분</u>	<u>강제징수비</u>
<u>비</u> 를 포함한다)의 납부기한을	
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	
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	
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	
지정할 수 있다.	
제14조(납기 전 징수) ① 세무서	제14조(납기 전 징수) ①
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	
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	
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	
징수할 수 있다.	
1. 국세의 체납으로 <u>체납처분을</u>	1 <u>강제징수를</u>

받을 때

- 2.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<u>체납처분을</u> 받을 때
- 3. ~ 8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19조(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 예의 효과) ①·② (생 략)
 -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 하여 <u>체납처분(교부청구는 제</u> 외한다)을 할 수 없다.
 - ④·⑤ (생 략) 제3장 <u>체납처분</u>

제1절 <u>체납처분</u>의 절차
제25조(신분증의 제시) 세무공무원이 <u>체납처분을</u>하기 위하여질문·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제27조(질문권·검사권) 세무공무원은 <u>체납처분을</u>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

2
<u>강제징수를</u>
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
예의 효과) ①・② (현행과 같
승)
③
강제징수(교부청구는 제
외한다)를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3장 <u>강제징수</u>
제1절 <u>강제징수</u> 의 절차
제25조(신분증의 제시)
<u>강제징수를</u>
.
제27조(질문권·검사권)
<u>강제징수를</u>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제28조의2(<u>체납처분</u> 집행 중의 출입제한)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<u>체납처분을</u>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및 제28조에 따른 참여 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<u>체납처분</u>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30조(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) 세무공무원은 <u>체납처분</u> 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 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(「신 탁법」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 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「민 법」 제406조·제407조 및 「신 탁법」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

1. ~ 7.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2(<u>강제징수</u> 집행 중의
출입제한)
<u>강제징수를</u>
<u>강제징수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
회복) <u>강제징수</u> =
<u> </u>

행위(詐害行為)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제30조의2(체납처분의 위탁)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 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<u>체</u> 납처분(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<u>체납처분</u>에 한정한다)을 세관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<u>체납처분</u>의 위탁 방법,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<u>체납처분</u>의 위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33조의3(압류 시 제3자의 권리 보호)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<u>체납처분</u>의 집행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·질 권·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절 <u>체납처분</u>의 효력 제35조(가압류·가처분 재산에 대 한 <u>체납처분</u>의 효력)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
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
<u>강</u>
<u>제징수</u>
<u>강제징수</u>
<u>.</u>
② <u>강제징수</u>
<u>강제징수</u>
,
제33조의3(압류 시 제3자의 권리
보호)
<u>강제징수</u>
,
제3절 <u>강제징수</u> 의 효력
제35조(가압류·가처분 재산에 대
한 강제징수의 효력)

<u>납처분 대상</u>인 경우에도 이 법 에 따른 체<u>납처분을</u> 한다.

제37조(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)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<u>체납처분을</u> 집 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<u>체납처분은</u>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.

### ② (생 략)

- 제49조(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·수 익)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세무서장은 <u>체납처분을</u> 집 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, 항공기,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 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 다. 다만, 출항준비(出航準備)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 하여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.

### ④ (생 략)

제62조(수의계약)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

<u> 제징수 대상</u>
<u>강제징수를</u>
제37조(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
강제징수의 효력) ①
강제징수를
<u> </u>
<u>강제징수는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49조(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·수
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강제징수를</u>
•
④ (현행과 같음)
제62조(수의계약) ①

매각할 수 있다.

- 1.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 하면 매각대금이 <u>체납처분비</u> 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 는 경우
- 2. ~ 6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65조(공매보증금) ① ~ ③ (생략)
  -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(競落者) 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 매보증금을 <u>체납처분비</u>,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 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.
- 제69조(공매의 취소 및 공고)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 매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(생략)
  - 2. 제85조의2에 따라 <u>체납처분</u>을 유예한 때
  - 3. 「행정소송법」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<u>체납처분</u>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
  - 4. (생략)

1
<u>강제징수비</u>
o c (원레기 기호)
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 제65조(공매보증금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 ④
4
<u>강제징수비</u>
제69조(공매의 취소 및 공고) ①
4 (515) 1 -2 6)
1. (현행과 같음)
2 <u>강제징수</u>
를
3
<u>강제징수</u>
4 ( =1 =1 =1 = 1 = 2 )
4. (현행과 같음)

- ②·③ (생 략) 제78조(매각결정의 취소) ① (생 략)
  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 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 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,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 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<u>체납처</u> 분비,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 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.

제12절 <u>체납처분</u>의 중지·유예 제85조(<u>체납처분</u>의 중지와 그 공고) ① <u>체납처분의</u>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<u>체납처분</u> 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<u>체납처분을</u> 중지하여야 한다.

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<u>체납처분비</u>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<u>체납처분을</u> 중지하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78조(매각결정의 취소) ① (현
행과 같음)
2
<u>강제징</u>
<u>수비</u>
제12절 <u>강제징수</u> 의 중지·유예
제85조( <u>강제징수</u> 의 중지와 그 공
제85조( <u>강제징수</u> 의 중지와 그 공 고) ① <u>강제징수의</u>
고) ① <u>강제징수의</u>
고) ① <u>강제징수의</u> <u>강제징</u>
고) ① <u>강제징수의</u> <u>강제징</u> <u>강제징</u> 수비
고) ① <u>강제징수의</u> <u>강제징</u> <u>강제징</u> 수비
고) ① <u>강제징수의</u>
고) ① <u>강제정수의</u>

여야 한다. 다만, <u>체납처분의</u>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 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 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 우 세무서장은 <u>체납처분을</u> 중 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<u>체납처분</u>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주에

항에 따라 <u>체납처분</u>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 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<u>체납처</u> 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(체납자와 <u>체납처</u> 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)도 <u>체납처분</u>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85조의2(<u>체납처분</u> 유예) ① 세 저 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<u>체납</u> <u>처분</u>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

<u>강제징수의</u>
강제징수를
③
<u>강제징수</u>
<u>.</u>
④강제징
<u>수</u>
 강제징
<del></del>
<u>강제징수</u>
_ <del></del>
세85조의2( <u>강제징수</u> 유예) ①
강제
<u> </u>
_ <del></del>

류재산의	의 매건	<b>나을</b> 다	H통령령 9	으로
정하는	바에	따라	유예할	수
있다.				

- 1.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⑤체납처분유예의취소와체납액의일시징수에관하여는제20조를준용한다.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강제징수</u>